

영어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고 WorkSafeBC(근로자재해보상위원회) 청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에게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구 건을 다루는 WorkSafeBC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통역사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의 사항:** 이 안내서는 정보용에 한합니다. 여기에 실린 정보가 근로자재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이나 WorkSafeBC의 정책과 다른 경우, 법과 WorkSafeBC 정책이 우선합니다.

## 이 안내서를 사용하는 방법

이 안내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다음과 같이 근로자 재해보상 제도를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 재해보상의 기본 정보
2.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의 종류
3. 직장 복귀
4. 재해보상 제도 내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또한, 5~6페이지에 WorkSafeBC 및 WorkSafeBC 관련 사무소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목록이 나와 있어 더욱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재해보상의 기본 정보

### 수혜 대상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일하는 대부분 사람은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중역, 회사 소유주 여부를 불문하고 WorkSafeBC 제도의 수혜 대상입니다. 고용주가 WorkSafeBC에 등록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다음의 경우 WorkSafeBC에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 업무에서 기인하는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 자영업자의 경우, WorkSafeBC 평가부(Assessment Department)에 연락하여 선택적인 개인보호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십시오. 통역이 필요하면 주선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의미

WorkSafeBC는 업무와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에게 보상합니다.

부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친 시점에 반드시 일을 하고 있었어야 하며, 다친 원인이 반드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일 때문이어야 WorkSafeBC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그 병에 걸린 원인이 반드시 일 또는 근무환경 때문이어야 WorkSafeBC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WorkSafeBC는 신체적 상해와 심리적 상해를 모두 보상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하거나 업무의 결과로 질병에 걸려 WorkSafeBC가 보상청구를 수락하는 경우, 저희는 의료비(특정 한도까지 및 일부 제한사항 적용)와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 소득 일부를 지급합니다.

## 재해보상 제도의 자금 조달원

WorkSafeBC는 전적으로 고용주들이 보험료를 내는 보험제도입니다. **재해보상 제도는 주세나 연방세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회사의 WorkSafeBC 보험료를 내려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급여에서 금전을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이 제도의 자금을 조성하는 대신,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자신의 고용주나 다른 고용주 또는 다른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청구권

법에 의하여, 고용주는 모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3일 이내에 WorkSafeBC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보고하지 말라고 하거나 근로자를 WorkSafeBC 보고에서 제외하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든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쳤을 때 직장에서 진료소 또는 병원까지 구급차나 교통편이 필요하다면, 고용주는 법에 따라 그 비용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청구 개시

WorkSafeBC가 근로자나 고용주 또는 의사(또는 누구든지 근로자를 치료하는 사람)로부터 보고를 접수하면 근로자를 위하여 청구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고용주는 물론 의사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용주와 의사는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을 알린 날짜로부터 반드시 3일 이내에 서류를 작성하여 WorkSafeBC에 보내야 합니다.

근로자는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업무상 질병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직장을 바꿨어도 업무상 질병이 있음을 깨달을 때는 WorkSafeBC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텔레클레임(Teleclaim)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희 콜센터에 604 231-8888 또는 무료전화 1 888 967-5377로 연락하면 청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텔레클레임 담당자가 부상이나 질병의 내용을 기록하고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주선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고객관리번호

WorkSafeBC에 보상청구를 등록하면 고유 고객관리번호를 받습니다. 이 고객관리번호는 평생 고유번호입니다. 한 건 이상 청구를 제기하면, 각 청구번호가 고유 고객관리번호에 연계됩니다.

## 청구번호

WorkSafeBC에 청구를 제기하면 청구번호를 드립니다. 이 번호가 있으면 WorkSafeBC 콜센터에 연락하여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orkSafeBC.com을 방문하여 WorkSafe™ 온라인 서비스 메뉴에서 “Check the status of a claim”(청구 현황 확인)을 선택하면 자신의 청구 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의사도 근로자의 청구번호를 받으므로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일절 알아볼 수 없습니다.

## 개인 액세스 번호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청구가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는 안전한 개인 액세스 번호와 함께 다음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WorkSafeBC 자동응답전화 이용방법 또는 온라인 청구현황 신청방법 안내문도 받습니다.

- 보상금 지급 여부
- 보상 금액
- 수표 발급일

개인 액세스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청구와 관련하여 기타 의문사항이 있거나 자동응답전화 대신 WorkSafeBC 직원과 통화하려면, WorkSafeBC에 604 231-8888(광역 밴쿠버 지역)이나 무료전화 1 888 967-5377로 연락하십시오. 통역이 필요하면 주선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BC주 외부에서의 청구

BC주 밖에서 일하다 다쳤지만 통상적으로 살고 일하는 곳이 BC주이며 고용주의 사업 기반이 BC주에 있으면, 대개 WorkSafeBC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다 다친 주의 근로자재해보상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일부 경우, BC주와 또 다른 주에서 근로자 재해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상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느 주에서 보상을 청구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WorkSafeBC에서 아직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경우, WorkSafeBC의 담당 직원에게 알리고 이사 갈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이사 때문에 회복과 직장 복귀가 늦어지지 않는 한 혜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WorkSafeBC는 BC주에서 허용된 금액 한도까지만 진료비를 부담하고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 보상청구 처리방법

대부분 경우, 청구는 WorkSafeBC의 텔레클레임 콜센터에서 시작합니다. 근로자나 고용주 또는 의사로부터 근로자가 부상했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는 보고를 접수하면 저희는 근로자를 위하여 청구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 결정하려면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WorkSafeBC 직원이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에 관한 내용을 묻거나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 정보가 충분하고 WorkSafeBC 직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WorkSafeBC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비롯한 손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정보가 충분하고 WorkSafeBC 직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면 근로자에게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 WorkSafeBC 팀 구성원

부상이 얼마나 오래갈 것으로 예상하느냐에 따라 WorkSafeBC의 다양한 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 청구(3주 미만)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음 WorkSafeBC 직원들과만 접촉하게 됩니다.

- 텔레클레임 담당 - 근로자를 위하여 청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서비스 담당(client service representative) - 질문에 답하고 단순한 청구에 대하여 수혜자격을 결정합니다.
- 자격심사 담당(entitlement officer) - 단순한 사례와 복잡한 사례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단순한 사례를 관리합니다.
- 상담 간호사(nurse advisor) - 자격심사 담당을 도와 안전한 조기 직장복귀 기회를 주선합니다.
- 임금률 담당(wage rate officer) - 임금 손실물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장기 청구인들은 아주 다양한 WorkSafeBC 직원들과 협력합니다. 복잡한 청구의 경우, 사례관리자(case manager, 중전의 “심판관”(adjudicator)과 비슷함)가 배정됩니다. 다음은 함께 일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 사례관리자 - WorkSafeBC 팀, 고용주, 노조대표, 의료 제공자 등의 노력을 비롯한 사례의 모든 면을 조정합니다. **사례관리자는 근로자가 WorkSafeBC에서 일차적으로 연락할 직원입니다.**
- 팀 보조원(team assistant) - 예약 일정잡기, 정보 관리, 통신물 작성 등으로 사례관리팀을 지원합니다.
- 의료 고문(medical advisor)과 상담 간호사 - 재활과 치료 계획 같은 의료 문제에 대하여 도움말을 주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 근로자의 가정의와 직접 협력합니다. 이들은 직장복귀 프로그램 촉진을 돕기도 합니다.
- 직업재활 상담원(vocational rehabilitation consultant) - 근로자 및 사례관리자와 함께 일하며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판별하고 극복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직업재활 상담원은 근로자가 현재 직장이든 새 직장이든 적절히 재취업하도록 돕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심리사(psychologist) - 부상이나 질병의 감정적 또는 심리적 측면을 다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팀원 모두의 목표는 근로자가 직장에 조기에,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 청구 관리 요령

- 청구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 WorkSafeBC 직원과 통화하기 전 청구번호, 고객관리번호, 개인 액세스 번호를 준비합니다.
- 청구 관련 서류를 모두 복사해 둡니다(서식, 보고서, 영수증 등).
- WorkSafeBC 직원, 담당 의사, 고용주와의 통화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날짜와 내용).
- 처방약과 기타 의료혜택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 사례관리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신의 청구 건을 담당하는 팀 보조원을 찾습니다.
- 인내하되 전향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WorkSafeBC는 매년 약 160,000건의 청구를 접수하므로 결정에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사항이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하여 상의하십시오.
- 청구 처리가 2주 이상 걸리면 잊지 말고 2주에 한 번씩 WorkSafeBC에 연락하여 장애현황을 확인합니다(5페이지 참조). 일부 상황에서 이 단계는 사례관리자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행(가족, 출장, 휴가)할 예정이라면 WorkSafeBC에 연락하여 여행이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십시오.

## 혜택

### 혜택의 종류

청구가 인정되면 WorkSafeBC는 인정된 의료비(의료혜택이라고도 함)와 임금손실 급여 외에 필요한 모든 재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생산적인 생활로 복귀하게 합니다. 또한, 영구장애가 있는 경우 영구장애 혜택을 제공하고, 사망의 경우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에게는 연금혜택이 제공됩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WorkSafeBC의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한 경우, 사례관리자나 자격심사 담당에게 문의하십시오. 이사항 때는 바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 임금손실에 대한 혜택

소득 보전금(earnings equivalency)이라고도 하는 임금손실 지급금은 대개 **부상 당시 평균 순소득의 90퍼센트**입니다. 평균 순소득을 산정할 때, WorkSafeBC는 해당 시 캐나다연금제도(CPP) 납부금, 고용보험(EI) 보험료, 연방 및 주 소득세 등을 공제합니다. 평균소득은 WorkSafeBC가 정한, 보험에 들 수 있는 최대 임금률(1년에 약 \$62,400)을 넘지 않습니다. 최소 임금률과 최대 임금률은 매년 조정됩니다. 도제 또는 견습생\*이거나, 사고 직장에서 12개월 미만 근무했거나,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WorkSafeBC에서 보험을 구입한 독립 경영자 또는 고용주인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WorkSafeBC에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상일로부터 10주가 지나도록 계속 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율을 재고합니다.** 이 경우, T4 소득 서류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득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률을 정하는 것은 때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임시직, 교대 근무직, 복수 고용직 등의 경우, 자신의 청구 권을 다루는 WorkSafeBC 직원과 자신의 근무 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WorkSafeBC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의료혜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와 소모품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보상 가능한 부상에서 회복되는 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소모품 비용을 WorkSafeBC에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제품이나 서비스 중 일부는 WorkSafeBC가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반드시 청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료 서비스나 소모품이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구입하기 전에 사례관리자나 자격심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보상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의료 서비스와 소모품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압요법사나 의사, 전문의의 치료 또는 의사가 의뢰한 경우 물리치료사나 마사지치료사의 치료. (WorkSafeBC는 대개 한 번에 위 전문가 중 1인의 치료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4주를 초과하는 물리치료나 마사지 치료는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 모든 치료사가 WorkSafeBC 고객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 치과 의사의 치료
- 병원, 검사실, 엑스선 서비스
- 간호
- 개인 신변관리 지원
- 보상 받고 있는 부상과 관련한 처방약
- 의료 소모품 또는 인공 수족, 지팡이, 의치, 보청기, 휠체어, 안경, 목발, 허리와 다리 고정기, 일부 보장구 등의 장비
- 필요 시 주택, 차량, 작업장 등의 개보수
- 진료나 회복에 필요한 부분인 기타 경비

의료비 지급과 관련한 문의는 지급서비스부(Payment Services)에 604 276-3085 또는 무료전화 1 888 422-2228로 하십시오. 통역이 필요하면 주선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대부분 경우 해당 의료인이 WorkSafeBC에 비용을 직접 청구합니다. 본인 부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WorkSafeBC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견습생은 취업 전에 훈련을 받거나 견습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임.

## 영구장애에 대한 혜택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에게 영구 장애가 생겼다는 증거가 있으면, 평가를 통해 영구장애 혜택 수혜 여부를 판정하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WorkSafeBC는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상이나 질병의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 사망에 대한 혜택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 WorkSafeBC는 부양가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고 장례비도 지급합니다.

## 고용주가 계속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않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온전한 급여를 계속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주도 있습니다. 이 경우, WorkSafeBC는 임금손실 급여를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혜택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점

WorkSafeBC의 임금손실 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 이후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하지 못한 첫 번째 근무부터 적용되어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료비는 부상한 날부터 보상됩니다.

**임금손실 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또는 사례관리자가 결론적으로 직장복귀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부상에서 회복됐다고 하거나 의료적 회복이 최대한도에 도달했다고 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가벼운 직무 또는 안전하고, 적합하며, 생산적인 수정된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런 직무를 하러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WorkSafeBC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2주마다 WorkSafeBC에 연락하여 장애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주: 일부 상황에서는 사례관리자가 이런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수술에서 회복 중일 때)
- 근로자가 WorkSafeBC에서 주선한 의학적 검사나 프로그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회복을 지연시킬 수도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근로자가 WorkSafeBC에서 원하는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근로자가 적절한 직장복귀 계획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근로자가 WorkSafeBC에서 판정 목적으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의 청구가 허위임이 드러나는 경우

## 재활

### 신체적 재활

WorkSafeBC는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가장 복잡한 수준까지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진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부상 후 3주가 지나면 저희는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치료가 적합하다면 의사를 만나 이를 상의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의사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는 WorkSafeBC가 승인한 치료센터 중 근로자를 1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WorkSafeBC가 승인한 가까운 클리닉에 물리치료, 업무 조건화, 작업치료, 기타 특수치료를 받도록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재활의 목표는 직장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 심리치료

WorkSafeBC의 사례 담당 직원이 근로자가 부상의 결과로 심리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심리치료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심리 평가를 주선해 드립니다. 그런 다음 대개 등록된 심리사의 치료를 받으도록 의뢰해 드립니다. 이 치료비는 WorkSafeBC에서 부담합니다.

## 직장 복귀

### 직장복귀 시점

직장복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면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이 경과 보고서를 WorkSafeBC 사례 담당 직원에게 보냅니다.

### 직장복귀 프로그램 소개

회복기간 중 직장복귀에 도움이 되려면, 자신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과도기적 업무에 대하여 고용주와 상의하십시오. 이는 가벼운 일이나 수정된 일, 근무시간 단축, 일상업무와 전혀 다른 일정 기간의 직무를 뜻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자와 상담간호사는 해당 직무가 안전하고, 적합하며, 적절하도록 담당 의사, 고용주, 노조, 본인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을 고용주가 제안하면 이를 WorkSafeBC 사례관리자와 상의하십시오.

고용주에게 기존의 직장복귀 프로그램이 없다면 WorkSafeBC 사례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을 돕습니다.

### 기능 향상 및 새 직종 구직을 위한 재훈련

근로자가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고 고용주에게도 달리 적합한 일거리가 없다면, WorkSafeBC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돕거나, 필요 시 다른 직장에서 다른 직무를 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 직장복귀 우선순위

직장복귀 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합니다.

1. 기존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함
2. 기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함
3. 새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함

직업재활 상담원이나 사례관리자는 이 절차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 결정을 심사 받고 재심사 받을 수 있는 권리

청구 전체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WorkSafeBC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와 더불어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를 보냅니다. 결정 또는 결정의 배경 이유가 이해되지 않으면, 해당 편지를 작성한 WorkSafeBC 직원에게 연락하십시오.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결정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따른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결정 내용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와 재심사 절차를 신청하려면 특정 시한이 있습니다. 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받으려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받으려면 결정일로부터 대개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구심사와 재심사 안내서(Claims Review and Appeal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 WorkSafeBC.com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보호 받을 권리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WorkSafeBC 청구 파일 및 청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 파일과 그 내용은 본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고용주가 재심사를 요청하면 본인의 파일을 양자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청구 파일에 있는 정보의 사본을 요청하려면 정보공개부(Disclosures Department)에 편지를 보내십시오. 자신의 청구 파일과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사본을 요청하려면 '정보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부'(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Department)에 편지를 보내십시오.(주소 목록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 공정한 조언을 받고 불만사항을 제기할 권리

조언을 받거나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 근로자 상담원(workers' adviser) – WorkSafeBC 결정에 불복하고 중립적인 조언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 상담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비용은 주정부에서 부담합니다. WorkSafeBC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아무 때나 근로자 상담원에게 연락하십시오.
- WorkSafeBC 불만사항 처리실(Complaints Office) – WorkSafeBC에 의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WorkSafeBC 불만사항 처리실에 연락하면 불만사항이나 우려사항을 해결하려고 협력할 것입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목록은 5~6페이지에 있습니다.

### 제3자 관련 시 근로자의 권리

업무 중 부상하였고 원인 제공자가 근로자도 고용주도 아니라면, WorkSafeBC의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대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고용주나 다른 직원, 동료 근로자를 상대로는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장 가까운 WorkSafeBC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범죄의 결과로 부상하는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안전법무부(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the Solicitor General)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피해자 정보의 전화 무료상담 번호는 1 800 563-0808입니다.

### 청구 시 근로자의 책임

**부상을 보고하십시오. 일하다 다치면 고용주에게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고용주는 근로자의 부상을 저희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부상이어서 별다른 피해가 없거나 근무를 빠진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보고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혜택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WorkSafeBC에 2주에 한 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청구 담당팀과 연락을 유지하여 진료와 회복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자가 확인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자가 수술에서 회복 중이라서 2주 이상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경우입니다.

**일하는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WorkSafeBC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유급 업무를 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반드시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상을 받고 있는 동안 일할 생각이라면 WorkSafeBC의 사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회복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저희가 안전한 조기 직장복귀를 권유한다 해도 유급 업무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사기행위이며 WorkSafeBC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회복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 WorkSafeBC와 담당 의사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고용주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가벼운 일이나 수정된 일을 맡길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담당 의사를 만나십시오.** 의사가 처방하는 치료를 계속 받고 증세에 따라 필요한 만큼 자주 의사를 만나십시오. 약을 복용하고, 요법을 계속하며, 의사가 보내주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석하십시오. **이 시점에서 근로자가 할 일은 부상에서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 자세한 정보

### WorkSafeBC 웹사이트: [WorkSafeBC.com](http://WorkSafeBC.com)

WorkSafeBC 웹사이트에는 간행물, 서식, 온라인 옵션 등 WorkSafeBC의 모든 면에 걸쳐 광범위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WorkSafeBC 사무소 위치와 전화/팩스 번호

#### 우편주소와 팩스번호

WorkSafeBC에 보내는 모든 서면 통신물은 지역이나 지방 사무소가 아닌 다음 주소로 우편이나 팩스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WorkSafeBC  
PO Box 4700 Stn Terminal  
Vancouver BC V6B 1J1  
무료팩스 1 888 922-8807  
광역 밴쿠버 팩스 604 233-9777

#### WorkSafeBC 콜센터

604 231-8888 또는 1 888 967-5377  
월~금, 오전 8시~오후 4시30분

#### 지역 WorkSafeBC 사무소

최근 연락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본사 / 리치먼드(Richmond)  
6951 Westminster Highway  
전화 604 231-8888  
1 888 967-5377  
팩스 604 233-9777  
1 888 922-8807

**주의 사항:** 통역사가 직접 (리치먼드 사무소에 한함) 또는 전화상으로 필요한 경우 미리 주선했을 수 있습니다.

애보츠포드(Abbotsford)  
2774 Trethewey Street

버나비(Burnaby)  
450 - 6450 Roberts Street

코퀴틀람(Coquitlam)  
104 - 3020 Lincoln Avenue

코트니(Courtenay)  
801 - 30th Street

캠룹스(Kamloops)  
321 Battle Street

켈로나(Kelowna)  
110 - 2045 Enterprise Way

나나이모(Nanaimo)  
4980 Wills Road

넬슨(Nelson)  
524 Kootenay Street

노스밴쿠버(North Vancouver)  
400 - 224 Esplanade Ave. W.

프린스조지(Prince George)  
1066 Vancouver Street

써리(Surrey)  
100 - 5500 152 Street

테라스(Terrace)  
4450 Lakelse Avenue

빅토리아(Victoria)  
4514 Chatterton Way

#### 기타 WorkSafeBC 서비스

Disclosures Department(정보공개부)  
PO Box 4700 Stn Terminal  
Vancouver BC V6B 1J1  
전화 604 279-7607  
1 888 967-5377, 내선 7607  
팩스 604 276-3102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Department  
(정보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부)  
PO Box 2310 Stn Terminal  
Vancouver BC V6B 3W5  
전화 604 279-8171  
1 866 266-9405  
팩스 604 279-7401

Review Division(심사부)  
PO Box 2071 Stn Terminal  
Vancouver BC V6B 3S3  
전화 604 214-5411  
1 888 922-8804  
팩스 604 232-7747

WorkSafeBC Complaints Office(불만사항 처리실)  
PO Box 5350 Stn Terminal  
Vancouver BC V6B 5L5  
전화 604 276-3053  
1 800 335-9330  
팩스 604 276-3103

## 관련 조직

### Workers' Compensation Appeal Tribunal (근로자 재해보상 재심사 재판소)

150 - 4600 Jacombs Road  
Richmond BC V6V 3B1  
전화 604 664-7800 / 1 800 663-2782  
팩스 604 664-7898

### 근로자 상담원(Workers' Adviser) 사무소 [www.labour.gov.bc.ca/wab/](http://www.labour.gov.bc.ca/wab/)

에보츠포드  
전화 604 870-5488 / 1 888 295-7781

캠벨 리버(Campbell River)  
전화 250 830-6526 / 1 888 643-0013

캠롭스  
전화 250 371-3860 / 1 800 663-6695

컬로나  
전화 250 717-2096 / 1 866 881-1188

나나이모  
전화 250 741-5504 / 1 800 668-2117

넬슨  
전화 250 354-6933 / 1 866 354-6933

프린스조지  
전화 250 565-4280 / 1 800 263-6066

리치먼드  
전화 604 713-0360 / 1 800 663-4261

빅토리아  
전화 250 952-4393 / 1 800 661-4066

## 보건 및 안전 관련 정보

### 예방 정보의 전화

직장 보건과 안전, 근로자와 고용주의 책임, 직장 사고나 사건 보고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604 276-3100  
1 888 621-SAFE (7233)

### 보건 및 안전 관련 위급상황과 사고 보고

604 276-3301  
1 888 621-7233

정규 근무시간 이후 604 273-7711  
1 866 922-4357 (WCB-HELP)

© 2008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근로자재해보상위원회.  
모든 권리 보유. BC 주 근로자재해보상위원회는 당 위원회가 인지하는 경우 이 문서의 복사, 복제 및 배부를 장려합니다. 그러나 BC 주 근로자재해보상위원회의 서면 허가가 없이는 이 간행물의 어느 부분도 영리사업이나 기타 상업기업용으로 복사, 복제 또는 배부될 수 없으며, 어느 부분도 다른 간행물의 일부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